휴학







•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.

관련규정 바로가기 >



정의

특정사유로 해당 학기의 수강이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

후학종류별 신청방법

1. 일반휴학: 인터넷신청



일반휴학 신청 바로가기



2. 병역휴학: 인터넷신청(복무확인서류 첨부)



병역휴학 신청 바로가기



- 복무확인서류
 - 현역입영대상자: 입영통지서
 - 공익근무요원 : 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
 - 산업기능요원: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
- 3. 창업휴학: 소속대학 행정실로 방문 창업휴학원 작성 후 →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창업교육센터 소장 확인 →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→ 접수증 수령
 - (!) 증빙서류: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, 기타 창업관련 서류 등
- 4. 육아휴학: 인터넷신청(증빙서류 첨부)



유아휴학 신청 바로가기 🔼



(!) 증빙서류: 병원진단서(임신·출산확인서), 가족관계증명서 등

일반휴학 기간 및 연장

- 1. 휴학가능기간 : 재학 중 최대 8학기(4년)[5년제 학과의 경우 10학기(5년)]까지이며, 1회 신청시 최대 2학기 (1년)까지 가능
- 2. 휴학연장: 휴학 중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을 더 연장하고자 할 경우 (재학 중 1회만 사용가능) 학기개시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



일반휴학 신청 바로가기



신청기간 및 수업료 안내

- 1. 미등록 휴학: 학기말 시험 후 ~ 다음학기 개강전까지(1학기는 2월말, 2학기는 8월말)
- 2. 등록 휴학: 해당하기에 등록금 납부 후 ~ 학기말 시험 공고전까지
 -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: 등록금 전액 이월
 -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: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이월
 -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: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이월
 -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후 휴학 : 이월하지 아니함
 - (!) 수업일수 경과일은 학사일정에서 조회할 수 있다.

학사일정 바로가기



후학신청 취소

휴학취소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신청



🔂 휴학취소원(양식) 다운로드 赴



유의사항

- 1.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기간 내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병역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. 만약 제출하지 않을시 미복학제적 처리된다.
- 2. 군 입대 후 귀향조치된 학생은 복학 학년도, 학기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(수강하고자 할 경우)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대체(휴학하고자 할 경우)하여야 한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된다.
- 3.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 일반휴학은 허용하지 않으나 질병(종합병원급 4주 이상 진단서 첨부).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로 휴학이 가능하다.
- 4. 일반휴학은 학기별 수업일수 15주 종료일 2주 전부터 종료일까지는 할 수 없다.

5. 등록휴학의 경우, 「휴학·복학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납부한 등록금은 이월처리되고, 반환되지 아니한다.

관련근거

학칙 제22~24조, 휴·복학에 관한 규정